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2020년도 춘계 정례학술발표회는 “1960. 4.19. 혁명과 법제 변화”를 주제로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순연되었고, 7월 7일에야 극소수의 발표자 및 토론자가 참가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정례학술발표회는 극소수의 발표자 및 토론자가 참가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1) 제132회 定例學術發表會

◇ 주관 : 2020년 7월 7일(화) 오후 2시~ 6시

◇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517호 세미나실

◇ 주관 : 한국법사학회

〈프로그램〉

1960. 4. 19. 혁명과 법제의 변화

등록 및 개회 (14:00~14:10)

주제발표 (14:10~18:00)

제1세션 (14:10~15:20)

사 회: 윤성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제1주제: 4. 19 혁명과 헌법의 개정

발표자: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제2주제: 4. 19. 혁명과 정치제도의 변화

발표자: 전종익(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휴 식: 15:20~15:30

제2세션 (15:30~16:40)

사 회: 임상혁(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제3주제: 4. 19. 혁명과 사법제도의 변화

발표자: 문준영(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4. 19. 혁명과 반부패제도

발표자: 김대홍(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종합토론: 16:50~17:50

사 회: 이영록(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토 론: 법학분야: 황승흠(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정치학분야: 최선(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2) 제133회 定例學術發表會

◇ 일시 : (1) 2020년 9월 17일(목) 오후 7시~ 10시

(2) 2020년 9월 24일(목) 오후 7시~10시

◇ 장소 : Zoom 링크: 참가 희망자에게 송부(법사학회 e-mail로 참가신청 요망)

◇ 주관 : 한국법사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사학회 로마법연구회

〈프로그램〉

점유보호 : 로마법과 민법
-로마법상 특시명령을 중심으로- I

개회 (19:00~19:10)

사 회: 서을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주제발표 2020년 9월 17일(목) (19:00~22:00)

사 회: 손경찬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제1주제 "Inst.4.15 De interdictis 개관" (19:10-20:10)

발표자: 최병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론자: 서을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유증점유인도 특시명령(Quod legatorum) 사례 연구
: D.43.3.1.5에 관하여"(20:20-21:20)

발표자: 이철우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토론자: 이호규 (인하대 강사)

종합토론 (21:20-22:00)

사 회: 손경찬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토 론: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중모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승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점유보호 : 로마법과 민법
-로마법상 특시명령을 중심으로- Ⅱ

개회 (19:00~19:10)

사 회: 서을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최병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2부 주제발표 2020**년** 9**월** 24**일(목)** (19:00~22:00)

사 회: 박세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주제 "Interdictum의 절차적 특성" (19:10-20:10)

발표자: 성중모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한승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주제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의해 공유토지 점유를 박탈당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 회복 방법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공보 제590호 2020년 7월 15일)의 평석-" (20:20-21:20)

발표자: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김영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21:20-22:00)

사 회: 박세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이철우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호규 (인하대 강사)
서을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경북대 강사),
이선주 (정암학당)

2. 기타

1) 회원동정

(1) 우리 학회의 임상혁(숭실대 교수) 회원이 『나는 노비로소이다』의 후속편인 『나는 선비로소이다-송익필 노비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정치』(역사비평사, 2020. 7.)를 출간하였습니다. 서문의 일부를 보면 "특히 남다른 작업은 판결문에 대한 법률적 분석입니다. 먼젓번 책의 중심 의도가 흥미를 일으켜 전통법을 공부시키겠다는 작전임을 이제는 실토합니다. 이번 것은 심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한껏 당시 소송의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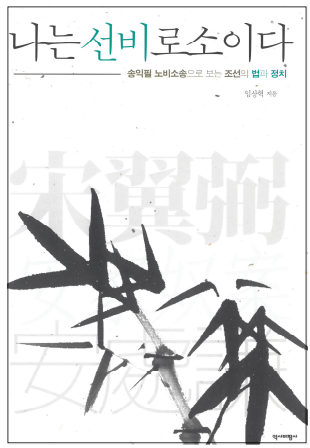

그리고 법의 해석과 적용을 꼼꼼히 짚었습니다. 현행 민사 절차와 그 이론에 대한 이해까지 늘 수 있도록 하는 신경도 썼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이 내려질 때부터 사필귀정이라는 환호와 극심한 법 왜곡이라는 탄식이 치열히 대립하였습니다. 조선의 법 이론을 살피며 과연 어느쪽인지 따져봅니다. 그 결론을 뚜렷이 내리긴 하지만, 근거를 다 밝혔기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도 각기 나름의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가노안(安家奴案)의 정치적 배경과 치열한 법리 논쟁을 입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안씨 측에서 신원회복 및 복수를 위해 몇십년간에 걸쳐 치열하게 소송을 준비해 온 모습을 사료발굴을 통하여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유려한 필치와 맞물려 마치 재미있는 추리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조선시대의 소송법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명쾌하게 풀어낸 책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2) 우리 학회의 김대홍(숭실대 교수) 회원은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김지수 교수의 연구서 *The Emotions of Justice*를 번역한 『정의의 감정들』(너머북스)을 2020년 11월 출간하였습니다. 김지수 교수는 감정사(history of emotion)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젠더와 신분의 주체가 사회 안에서 동등한 법적 주체로 인식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관

해 다양하고 복잡한 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의의 감정들』은 조선 여성의 소송으로 본 젠더와 신분, 법 감정을 다룬 책으로 조선시대 여성의 권리능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규명하고, 한국법제사에 관한 영어 논문을 준비하는 연구자에게 원문과 함께 널리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 법사학회 사이트 활용안내

한국법사학회 홈페이지는 http://legalhistory.or.kr/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한국법사학회의 각종 소식, 법사학과 관련된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정이나 법사학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으시면 lawhistory@naver.com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법제사 관련된 링크는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서양법제사, 일본법제사, 중국법제사와 관련된 링크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제보로 링크를 확충해 나가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국법사학회 총서

한국법사학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앞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를 추진해나가기 위해 '법사학연구총서', '법사학번역총서', '법사학자료총서'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법사학회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출간된 법사학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사학연구총서			
1	한국법사학회	韓國 近現代의 法과 法思想	2008
2	신번 저/정긍식, 조지만, 田中俊光 역주	譯註《大典詞訟類聚》: 잊혀진 法學者 申濚	2012
3	서정민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2013
4	최병조	비교법문화론	2018
5	김대홍	조선의 법추론 인율비부	2018
6	임대희 엮음	판례로 본 송대사회	2019

법사학번역총서			
연번	저자	제목	출간연도
1	문준영 · 성중모 · 조지만 옮김	개설 서양법제사	2020

4. 운영위원회

회장	김창록(경북대)
명예회장	박병호(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부회장	정긍식(서울대), 이재룡(충북대), 정병호(서울시립대)
고문	서민(충남대 명예교수), 최종고(서울대 명예교수), 정종휴(전남대 명예교수), 최병조(서울대 명예교수), 심희기(연세대), 한상돈(아주대)
기획이사	이종길(동아대)
감사	이영록(조선대), 임상혁(숭실대)
총무이사	조지만(아주대), 손경찬(연세대)
법제이사	김영희(연세대)
연구이사	서을오(이화여대), 문준영(부산대), 홍기원(Univ. de Tours), 김대홍(숭실대)
정보이사	성중모(서울시립대)
섭외이사	한승수(중앙대)
편집이사	전종익(서울대)
편집간사	김준현(서울대 박사과정)
편집위원	정긍식(편집위원장), 문준영(부산대), 박세민(경북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임대희(경북대), 이승일(강릉원주대), 이영록(조선대), 이재룡(충북대), 전종익(서울대), 조지만(아주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안종철(Tübingen Uni.)

5.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SC제일은행: 632-20-242388 (한국법사학회)

韓國法史學會 會則

(1973. 3. 3 제정, 2016. 10. 15. 최종 개정)

제1조【名稱】 本會는 韓國法史學會(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라고 한다.

제2조【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會長의 硏究室에 둔다.

제3조【目的】 本會는 法史學(韓國法史, 西洋法史, 東洋法史, 로마법, 敎會法, 法思想史) 硏究 및 硏究者 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고 韓國法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조【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硏究發表會 및 講演會의 開催
2. 硏究誌를 비롯한 圖書의 刊行
3. 外國學界와의 交流
4. 其他 理事會 또는 總會에서 適當하다고 認定한 事業

제5조【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學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자로 한다.

제6조【會員의 種類】본회의 회원은 다음 二種으로 한다.

1. 會　　員
2. 名譽會員

제7조【會員의 加入】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入會申請을 하고 이사회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名譽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며 本會發展에 寄與한 者로서 總會의 推薦을 얻어야 한다.

제8조【會員의 權利義務】 會員은 學會의 總會 및 각종 事業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고, 會則遵守, 總會 및 理事會 議決事項의 履行 및 理事會가 정하는 會費納付의 義務를 진다.

제9조【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인
2. 副 會 長　약간인(2016.10.15. 개정)
3. 名譽會長　약간인
4. 顧　　問　약간인
5. 理　　事　30인 이내
6. 監　　事　2인
7. 幹　　事　약간인

제10조【任員의 選出】 ① 名譽會長, 顧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② 會長과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하며 總會의 認准을 받는다.

③ 理事와 幹事는 會長이 任命한다.

④ 理事와 幹事의 업무분장은 會長이 한다.

제11조【任員의 任期】 會長을 비롯한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제12조【任員 및 理事會】 ① 會長은 本會를 대표하며 總會 및 理事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되며 本會의 事務를 執行한다.

② 會長은 理事會의 效果적인 運營을 위하여 理事 중에서 總務, 編輯,

硏究, 法制, 情報, 涉外, 企劃, 國際, 弘報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幹事는 總務幹事, 編輯幹事, 情報幹事 약간 명을 둔다.

④ 名譽會長과 顧問은 理事會 및 運營委員會의 諮問에 응하며, 本會의 各級會議에 參席·發言할 수 있다.

⑤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財産의 取得, 管理, 處分에 관한 사항, 總會가 委任한 사항, 會則을 施行하기 위한 規定의 制·改定, 각 分科委員會의 조직 기타 會長이 提案한 學會 運營에 관한 제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제12조의1 【分科】 硏究分科는 本會의 硏究組織으로서 韓國法史硏究會, 로마法硏究會 등을 둔다.(2016.10.15. 신설)

제13조【總會】 總會는 每年 적어도 1回이상 開催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會則의 制定 및 改定에 관한 사항
2. 會長과 副會長의 認准
3. 會計監査結果의 承認

제14조【總會의 議決】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同意로써 한다.

제15조【會計年度 및 監事】 ①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3月 1日부터 翌年 2月 末日로 한다.

② 監事는 會計年度 終了後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는다.

제16조【會員의 懲戒】 ① 學會의 發展을 沮害하거나 名譽를 손상한 會員에 대하여는 會長이 위촉하는 懲戒委員會를 구성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懲戒는 除名, 會員 資格의 停止 및 譴責으로 구분한다.

제17조【學術賞】 ① 本會의 學術研究를 奬勵하기 위하여 學會에 學術賞 制度를 둘 수 있다.

② 學術賞의 管理에 관한 事項은 따로 規定으로 정한다.

제18조【編輯委員會】 ① 本會에 學會誌의 編輯·刊行을 위하여 學會誌 編輯委員會를 둔다.

② 編輯委員會는 編輯委員으로 構成하며, 學會誌에 揭載하고자 하는 論文 審査 및 編輯과 刊行에 관한 전반적인 事業을 管掌한다.

③ 委員會의 構成과 事業에 관한 자세한 事項은 따로 規定으로 정한다.

제19조【研究倫理規定】 研究倫理 등에 관한 자세한 事項은 따로 '韓國法史學會 研究倫理規定'을 두어 정한다.

제20조【會則改正】 本 會則의 改正은 出席會員의 三分之 二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21조【準則】 本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一般學術團體慣例에 따른다.

附 則 本會則은 1973년 3월 3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0년 6월 29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1년 7월 5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7년 5월 31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3년 7월 4일부터 施行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7년 10월 1일부터 施行한다.
부 칙 본회칙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회칙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韓國法史學會 硏究倫理 規程

2007. 9. 29. 제정
2018. 12. 14.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사학회 회칙 및 간행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法史學硏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新稿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의 표절등 금지)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등의 중복사용 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자료는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명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 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연구윤리위반혐의가 있는 투고논문의 관련전공분야 연구이사 중 1인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7조(제재) ①투고논문이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1차 심사를 한다. 이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전항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라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5년간 본 학회지 투고의 금지
2. 해당 논문 필자의 소속기관에의 결과 통보

제3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8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에 대한 검토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

물에 게재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누구든지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의 작성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

제11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개봉한다.

제12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3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4조(질의서의 우송)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연구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5조(답변서의 제출) 전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6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연구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7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
2. 학회지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3. 5년간 학회지 투고 금지
4. 해당 논문 필자의 소속기관에의 결과 통보

제6장 제보자의 보호

제19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의 신원에 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반에 대한 조치)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의 회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7장 이의절차

제21조(이의의 제기) ① 투고자, 게재자 또는 신청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의제기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회장은 전조의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위한 추천직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연구윤리위원 등은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3조(절차)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이의절차는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결정의 효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규정의 개정 등

제25조(규정의 개정) ①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항의 의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8. 12. 14)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規程

(2008. 10. 25. 제정, 2018. 12. 14. 최종 개정)

제1조 (目的) 이 規程은 韓國法史學會(이하 "學會"라고 한다)에서 授與하는 瀛山 法史學 學術賞(이하 "이 賞"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趣旨) 이 賞은 法史學 및 古文書 硏究者들의 진지하고 創意的인 硏究를 독려함으로써 法史學 및 古文書學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趣旨로 한다.

제3조 (名稱 및 種類) 이 賞은 "瀛山 法史學 優秀學術賞(이하 "優秀賞"이라고 한다)" 및 "瀛山 法史學 新進學術賞(이하 "新進賞"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4조 (基金) ①이 賞의 財源은 瀛山 朴秉濠 先生이 出捐한 基金으로 한다.

②學會 會員 등은 위 基金과 별도의 基金을 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賞과 名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對象) ①優秀賞은 學會 會員 또는 韓國古文書學會 會員의 論文으로 한다.

②新進賞은 本學會 會員 또는 韓國古文書學會 會員으로 博士學位 取得日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의 論文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6조 (審査委員會) ①이 賞의 運營을 위하여 學會 내에 審査委員會를 둔다.

②審査委員會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學會長과 總務理事 및 硏究理事 1인은 當然職 審査委員이 되며 審査委員長은 學會長이 名譽會長 중에서 推戴한다.

④學會長은 古文書硏究者 1명을 포함하여 다른 審査委員을 그 해 6월까지 委囑한다.

⑤審査委員長은 施賞 3개월 이전에 審査委員會를 召集한다.

⑥審査委員長이 有故일 때에는 審査委員 중 最年長者가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⑦審査委員會에서의 決議는 委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⑧審査委員의 任期는 그 해 年末까지로 한다.

⑨審査委員의 名單은 公開하지 아니 한다.

⑩審査委員에게는 學會의 決定으로 소정의 活動費를 支給할 수 있다.

제7조 (受賞者의 決定) ①優秀賞은 隔年으로, 新進賞은 매년 論文執筆者에게 授與하며, 受賞者는 그 해 11월말까지 決定한다.

②審査委員會는 前前年度 1월 1일부터 前年度 12월 31일까지 2년간 국내외 學術誌에 발표된 法史學 및 古文書 관련 論文 중에서 受賞者를 결정한다. 단 學位論文 및 이를 修正·補完한 論文은 對象이 되지 못한다.[개정: 2014.12.20.][개정: 2018. 12. 14.]

③學會의 會員과 審査委員은 매년 8월말까지 審査委員長 및 硏究理事에게 對象論文을 2편까지 소정의 樣式에 따라 推薦할 수 있다.

④受賞者는 제3항의 節次에 의해 推薦된 論文에 대하여 審査委員 2/3 이상의 贊成으로 選定한다.

⑤제4항의 要件을 충족한 論文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의 受賞者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⑥審査委員會의 議事 및 審査經過는 公開하지 아니 한다.

제8조 (施賞 및 副賞) ①審査委員會에서 受賞者가 決定되면 審査委員長은 적절한 방법으로 受賞者에게 受賞事實과 施賞方式을 通知하며, 그 해의 마지막 定例學術大會에서 施賞式을 開催한다.

②受賞者에게는 賞牌를 授與하며, 副賞으로 賞金을 授與할 수 있다. 賞金의 額數는 審査委員會에서 基金出捐者와 協議하여 決定한다.

제9조 (改正) 이 規程은 審査委員會의 發議로 學會 總會에서 改正한다.

제10조 (補則) 이 規程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學會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하거나 一般慣例에 따른다.

附則(2008. 10. 25)

이 規程은 2008년 10월 25일부터 施行한다.

단 제1회 受賞者의 決定과 施賞은 별도로 정한다.

附則(2018. 12. 14)

이 規程은 총회의 승인일부터 施行한다.

法史學硏究 刊行規程

1999. 7. 19 제정
2007. 6. 1, 전문개정
2017. 4. 29. 개정
2019. 11. 8. 개정
2019. 12. 16. 최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韓國法史學會(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 ; K.S.L.H. ; 이하 '학회'로 줄임)의 학회지인 法史學硏究(Korean Journal of Legal History ; K.J.L.H. ; 이하 '학회지'로 줄임)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간행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고자격】

① 학회의 회원(명예회원 포함, 이하 같음)과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비회원은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학회가 지정한 특수한 연구제에 대해서는 비회원에게도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원고】

① 학회지에는 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 등을 기고할 수 있다.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법사학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고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기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④ 학회지에 게재할 때에는 게재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2019. 12. 16. 신설)

제4조【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회장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7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은 편집위원 선임 및 편집위원장 위촉이 있은 후 열리는 이사회에 그 선임 및 위촉 사실을 보고하고 각각의 선임 및 위촉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논문 등의 투고지침, 심사지침 등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학회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3.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4.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단행본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5.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7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8조【투고원고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학회의 설립취지에 적합할 것

2. 한국 법사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가질 것
3. 기타 투고 및 심사를 위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② 학회지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심사등급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으로 나눈다.(2008. 9. 1. 개정)

③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하여 “게재”, “게재하지 않음”으로 결정한다.(2008. 9. 1. 개정)

제9조【학회지의 발간일】 학회의 정기 학회지인 “법사학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매년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2019. 11. 8. 개정)

제10조【학회지의 배포와 가증】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② 전항의 배포본 이외에 논문 등의 게재자에게 학회지 2부와 별쇄본 10부를 증정하며, 10부 이상의 별쇄본은 제작 실비를 게재자가 부담한다.(2017. 4. 29. 개정)

제11조【논문 등의 게재비】

① 논문 등의 게재자는 게재비 규칙에 따라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등의 게재비의 기준에 대한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저작권 등】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13조【학회지의 전자출판】

① 학회는 서적인쇄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학술목적을 위한 게재논문이용】 학회는 법률문화발전과 학술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자도서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 칙 (1999. 7.19.)

이 개정 규정은 제20호 발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9년에는 법사학연구 제20호를 발간한다.

부 칙 (2007.6.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9)

이 개정 규정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8)

이 개정 규정은 법사학연구 제61호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6)

이 개정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法史學硏究 投稿 및 審査指針

(2007. 6. 1 제정, 2008. 5. 1, 2008. 9. 1.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法史學硏究 刊行規程 제7조 제6항 및 제9조에 규정한 "法史學硏究"(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원고모집 및 투고, 투고원고의 작성방법,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고자격】

① 학회의 회원(명예회원 포함, 이하 같음)과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비회원은 학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학회가 지정한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비회원에게도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3조【투고원고】

① 학회지에는 논문, 연구사정리, 번역, 서평, 자료 등을 투고할 수 있다. 자료의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법사학분야의 연구에 관한 것으로서 학술적 독창성이 있고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조【투고원고의 작성방법】

① 투고자는 이 지침 및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투고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국한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과 주제어를 붙여야 한다.

③ 원고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문초록을 붙여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큰 외국어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문을 국한문으

로 번역한 원고를 같이 게재할 수 있다.

④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논문의 목적상 기준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게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6월 및 12월 중에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학회지의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하는 때에는 투고절차, 원고 집필 요령, 심사기준 및 절차, 학회 윤리규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원고의 제출 및 접수】

①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상반기 2월말, 하반기 8월말) 내에 학회의 편집이사 또는 간사에게 투고신청서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원고 집필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원본파일과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파일 2개를 전자매체기록장치(플로피디스켓, CD-Rom, 기타 외부저장장치)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③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④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고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원고 집필 요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④ 투고논문이 본 학회의 윤리규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조【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투고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투고원고를 심사한다.

1. 논문 : 주제설정의 창의성, 주제설정의 적실성,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기존참고자료의 조사 및 반영여부, 원고 집필 요령의 준수여부
2. 번역 :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3. 자료 및 그 해설 : 자료의 학술적·사료적 가치, 자료소개의 필요성, 해설의 학술적 완성도, 해설의 학문적 기여도
4.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전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심사위원은 총평과 함께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의 의견을 낸다.(2008. 9. 1. 개정)

제9조【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편집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2008. 9. 1. 개정)

1. “수정 후 게재”는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에 해당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권고한다.(2008. 9. 1. 개정)
2. “수정후 재심사”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게재하지 않음”에 해당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2008. 9. 1. 개정)
3. 게재여부는 3인의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2008. 9. 1. 개정)
4. 심사위원중 1인이라도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 의견을 낸 경우, 편집회의의 심사판정에 회부한다.(2008. 9. 1. 개정)
5. 편집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부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의 판정을 내린다.(2008. 9. 1. 개정)

④ “수정후 게재” 판정에 따라 수정된 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의 가부를 판정한다.

⑤ “수정후 재심사” 판정 한 때에는 그 결과와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지하여 1주일 이상의 수정기간을 부여한 후, 수정된 원고를 제출받아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게재의 가부를 판정한다.(2008. 9. 1. 개정)

⑥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수정후 재심사”, “게재하지 않음”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2008. 9. 1. 개정)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또는 “불가”의 결정을 한다.

제11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2008. 9. 1. 개정)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2008. 9. 1 개정)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는 투고일자, 심사개시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2008. 5. 1. 신설)

제12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학회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게재료 납부】학회지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 등의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정하는 게재비규칙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투고자격의 제한】

①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전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게재논문의 전자출판】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 (2007. 6. 1)

이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揭載費 規則

(1999. 7. 19 제정, 2017. 4. 29 최종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法史學硏究刊行規定 제9조에 의한 논문 등의 게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게재비는 법사학연구의 간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고자는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의 발표
2. 조판 쪽수가 목차, 외국어 초록 등을 포함하여 40쪽이 초과한 논문
3. 정례발표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논문

제4조【게재비】 게재비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① 제3조 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1. 41~45쪽 : 10만원
2. 46~50쪽 : 20만원
3. 51쪽 이상: 30만원

③ 제3조 제3호의 경우 전임교수 및 실무가는 30만원, 그 외의 자는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1쪽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부칙 (1999. 7. 1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20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4. 29.) 이 규칙은 법사학연구 제56호부터 적용한다.

원고 집필 요령

Ⅰ. 원고 집필 요령

1. 모든 원고에는 맨 처음에 제목과 필자를 기재하며, 필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및 이메일주소를 필자명에 붙인 각주로 처리하여 기재한다.

2. 장절항목의 번호는 Ⅰ. Ⅱ. Ⅲ. → 1. 2. 3. → 1), 2), 3) → (1), (2), (3)의 순서로 표기한다.
   *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Ⅰ. 등의 번호를 붙인다.

3. 필자명 다음에 장(Ⅰ. Ⅱ. Ⅲ.)과 절(1. 2. 3.)의 목차를 기재한다.

예)

목 차

Ⅰ. 머리말
Ⅱ.
  1.
  2.
Ⅲ.
  1.
  2.
Ⅳ. 맺음말

4. 목차 다음에 [국문요약]과 [주제어]를 기재한다.
   1) [국문요약]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전후로 한다.
   2) [주제어]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5. [주제어] 다음에 본문을 기재한다.
   1) 본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양어는 한자로 표기하며, 고유명사는 맨 처음 표기할 때 원어의 음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3) 서양어 및 한자 이외의 동양어는 번역하여 사용하며, 고유명사는 맨 처음 표기할 때 원어의 음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며,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4) 인용할 때에는 " "를,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5) 긴 문단을 인용할 때에는, 문단의 전후에 1행을 띄우고 좌우 들여쓰기를 하여 인용할 수 있다.

6. 본문 다음에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7. 〈참고문헌〉 다음에 영문의 [Abstract]와 [Key Words]를 기재한다.
1) [Abstract]의 분량은 400 단어 전후로 한다.
2) [Key Words]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8. 기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Ⅱ. 문헌 인용 방법

* 모든 원고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문헌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국내 및 동양 문헌 인용법
1) 저서
(1) 저자, 『서명』(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단, 국내서는 출판지를 생략한다)
예 : 朴秉濠, 『근세의 법과 법사상』(진원, 1996), 100면.
(2) 반복되는 경우 : 저자, 앞의 책, 면수.
예 : 朴秉濠, 앞의 책, 110면.

(3) 직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 저자, 위의 책, 면수.

예 : 朴秉濠, 위의 책, 110면.

(4) 동일 저자의 여러 책 중 반복되는 경우 : 저자, 앞의 책(각주 **), 면수.

예 : 朴秉濠, 앞의 책(각주 10), 110면.

2) 논문

(1)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호수(발행처, 발행연도), 면수.

예 : 南興祐, 「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의 法規範과 그 適用에 관한 問題」, 『亞細亞研究』 12-1(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49면.

(2) 반복되는 경우 : 필자, 앞의 글, 면수.

예 : 南興祐, 앞의 글, 50면.

(3) 직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 필자, 위의 글, 면수.

예 : 南興祐, 위의 글, 50면.

(4) 동일 저자의 여러 논문 중 반복되는 경우 : 필자, 앞의 글(각주 **), 면수.

예 : 南興祐, 앞의 글(각주 10), 50면.

3) 사료의 경우에는 필자가 특정하기 위해 "≪ ≫", "〈 〉"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서양 문헌 인용법

1) 저서

(1) 저자, 서명(출판지 :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 Paul Brand, *The Origins of the English Legal Profession* (London : Blackwell, 1992), p.100.

(2) 반복되는 경우 : ibid, op. cit, 등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

2) 논문

(1) 필자, "논문명", 게재지명(발행처, 발행연도), 면수(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 Richardson, J. S., "Lex Calpurnia de repetundis", *Journal of Roman Studies* 77(1987), pp.1-12

(2) 게재지 명칭의 약칭은 각국의 관례에 따르되,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3) 면수는 각국의 인용예에 따라 p., S. 등을 사용한다.

(4) 반복되는 경우 : *ibid*, *op. cit*, *a.a.O.* 등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

[編輯委員]

편집위원장 정긍식

편 집 위 원 전종익
박세민
문준영
성중모
안종철
이영록
이재룡
임대희
임상혁
조지만
Marie Seong-Hak Kim

편 집 간 사 김준현

法史學硏究 第62號 값 32,000원

인 쇄 일 : 2020년 11월 30일
발 행 일 : 2020년 11월 30일

편 저 자 : 한국법사학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연구실
전화 (053) 950-6936
전송 (053) 950-6884
발 행 인 : 홍종화
발 행 처 : 도서출판 민속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25길 41
전화 (02)804-3320, (02)805-3320, (02)806-3320
팩스 (02)802-3346

ⓒ 2020, 한국법사학회